학교법인 한세대학교 제223회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정 수	9인	2인
재 적	9인	2인
출 석	9인	2인

1. 일　　시 : 2024년 2월 21일 (수) 10시 35분 ~ 12시 35분
2. 소집통보 : 2024년 2월 13일 (화)
3. 장　　소 : 여의도 CCMM빌딩 백원
4. 출결사항

구 분		성 명
출 석	이 사	김명전, 김두식, 김영걸, 박나리, 정소연, 최진안, 하지혜, 한재호, 허순범
	감 사	성종훈, 신범섭
결 석	이 사	
	감 사	

5. 안　　건

○ 1호 의안 : 정관 개정
○ 2호 의안 : 인사규정 개정
○ 3호 의안 : 교원 인사
○ 4호 의안 : 법인소관위원회 위원 변경
○ 5호 의안 : 2023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
○ 6호 의안 : 2024회계연도 본예산

6. 개회기도

재적이사 9인 중, 9인 이사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유호열 국장 직무대리가 보고하다. 김명전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개회기도를 하다.

간서명	하지혜	한재호	허순범

7. 전회 회의록 접수

김명전 이사장은 제222회 회의록은 배포된 회의자료를 참고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참석 이사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8. 의안 심의

가. 제 1호 의안 : 정관 개정

김명전 이사장이 위 의안을 상정하고, 유호열 국장 직무대리로부터 정관 개정 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심의하다.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제31조의3(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의3(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의2(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 ② (생 략)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제54조의2(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간서명	하지혜	한재호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3 신설>	제54조의3(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55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55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55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준용한다.

간서명	하지혜	한재호	허승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①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며,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①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며,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제2항제1호 신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7인
<제55조제2항제2호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 2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타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5조제2항제3호 신설>	3.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5조제3항 신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5조제4항 신설>	④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3조의 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간서명	하자혜	한재호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교육공무원법 제 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제1호 신설> <제62조제1항제2호 신설>	제62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3조의2 신설>	제63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정관 개정 안을 가결하다.

간서명	하지혜	한재호	최승범

나. 제 2호 의안 : 인사규정 개정

김명전 이사장이 위 의안을 상정하고, 유호열 국장 직무대리로부터 인사규정 개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의하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직) ① 대학의 부총장, 각 대학원장, 학부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는 교원으로 보하고, 실. 처장 및 부속기관장은 교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시 부속기관장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한 겸임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제9조(보직)** ① 대학의 부총장은 교직원, 또는 교원과 동등 이상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로 보하며, 각 대학원장, 학부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는 교원으로 보하고, 실. 처장 및 부속기관장은 교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시 부속기관장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한 겸임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제34조(감봉과 견책) 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제34조(감봉과 견책)** 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제37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관할)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 7인(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으로 조직한다.	**제37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관할)**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 9인(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으로 조직한다.
제39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60일(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인사규정 개정 안을 가결하다.

간서명	하지혜	한재호	한승빈

다. 제 3호 의안 : 교원 인사

김명전 이사장이 위 의안을 상정하고, 유호열 국장 직무대리로부터 한세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승진•연구년 복귀에 따른 교원 인사 제청 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심의하다.

1) 신규임용

성 명	소 속	직 급	임용기간
오훈식	예술학부 공연예술학과	조교수	2024.03.01.~ 2026.02.28.
정기열	예술학부 공연예술학과	조교수	2024.03.01.~ 2026.02.28.

2) 승진

구 분	성 명	소 속	현 직급	승진 직급	임용기간
정년트랙	강승모	디자인학부 실내건축디자인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28.08.31.
정년트랙	김형준	IT학부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26.08.31.
정년트랙	김희수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33.08.31.
정년트랙	송인화	교양학부	부교수	교수	2024.03.01.~ 2029.02.28.
정년트랙	안종배	인문・사회과학부 미디어영상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28.02.29.
정년트랙	오지은	인문・사회과학부 국제관광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30.02.28.

간서명	하자헤	한 재호	한재호

구 분	성 명	소 속	현 직급	승진 직급	임용기간
정년트랙	유대현	IT학부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25.08.31.
정년트랙	유승지	예술대학원 피아노교수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32.02.29.
정년트랙	윤현철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33.08.31.
정년트랙	이경은	디자인학부 실내건축디자인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28.08.31.
정년트랙	이미애	간호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30.02.28.
정년트랙	이병주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27.02.28.
정년트랙	임미정	예술학부 음악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30.08.31.
정년트랙	임은영	디자인학부 실내건축디자인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30.02.28.
정년트랙	장남경	디자인학부 섬유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34.02.28.
정년트랙	정지영	예술학부 음악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35.02.28.
정년트랙	홍숙영	인문·사회과학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33.08.31.
정년트랙	송봉규	IT학부 산업보안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4.03.01.~ 2030.02.28.

간서명	허혜혜	한재호	허승범

구 분	성 명	소 속	현 직급	승진 직급	임용기간
정년트랙	유진희	인문·사회과학부 중국어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4.03.01.~ 2030.02.28.
정년트랙	이희숙	예술학부 공연예술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4.03.01.~ 2030.02.28.
비정년트랙 (연구전담)	이관표	간호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부교수	2024.03.01.~ 2027.02.28.

3) 특별 승진

성 명	소 속	현 직급	승진 직급	임용기간
김종호	예술학부 음악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25.02.28.
이왕헌	IT학부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교수	2024.03.01.~ 2025.02.28.

4) 연구년 복귀

성 명	소 속	직 급	임용기간	연구년 기간	복귀일자
이원진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학과	교수	2019.09.01.~ 2026.02.28.	2023.09.01.~ 2024.02.29.	2024.03.01.

김명전 이사장은 교원 인사의 경우 학교 재정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으므로 향후 한세대학교 교원 인사 제청 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키로 하며, 특히 노사합의에 의한 특별승진의 경우, 보다 엄격한 심사규정에 입각하여 심사 및 제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한세대학교에서 제청한 교원 인사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라. 제 4호 의안 : 법인소관위원회 위원 변경

[redacted]

간서명	하지혜	한재호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법인소관위원회 위원 변경 안을 가결하며, 본 안건은 비공개 하기로 하다.

마. 제 5호 의안 : 2023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

김명전 이사장이 위 의안을 상정하고, 유호열 국장 직무대리로부터 2023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심의하다. (별첨자료를 보며 2023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의함)

(단위 : 원)

구 분	2023 2차 추경예산	2023 추경예산	증 감 액
법인일반업무회계	2,473,275,151	1,473,275,151	1,000,000,000
법인수익사업회계	4,766,208,885	4,781,208,885	(15,000,000)
교 비 회 계	43,580,748,000	43,780,254,000	(199,506,000)

▣ 별첨자료

2023회계연도 법인일반업무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자금예산서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법인 및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간서명	하지혜	한재호	

바. 제 6호 의안 : 2024회계연도 본예산

김명전 이사장이 위 의안을 상정하고, 유호열 국장 직무대리로부터 2024회계연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심의하다. (별첨자료를 보며 2024회계연도 본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의함)

(단위 : 원)

구 분	2024 본예산	2023 추경예산	증 감 액
법인일반업무회계	1,507,689,151	2,473,275,151	(965,586,000)
법인수익사업회계	4,843,208,885	4,766,208,885	77,000,000
교 비 회 계	44,964,579,000	43,580,748,000	1,383,831,000

▣ 별첨자료

2024회계연도 법인일반업무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법인 및 교비회계 2024 회계연도 본예산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9. 보고 사항

유호열 국장 직무대리는 2023회계연도 결산 외부감사가 4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며, 결산 심의를 위한 이사회가 필요함을 보고하다. 김명전 이사장은 5월 중순 경 결산 심의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키로 하다.

10. 간 서명 임원 호선

김명전 이사장은 참석 임원을 대표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간 서명할 임원으로, 하지혜, 이사 한재호 이사, 허순범 이사를 호선한 바, 이에 참석 이사 전원 찬성하여 가결하다.

간서명	하지혜	한 재 호	

11. 폐회 선언

주기도문에 이어, 김명전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24년 2월 21일, 위 사실을 확인함.

학교법인 한세대학교

이사장 **김명전** 김명전

이 사 **김두식** 김두식

이 사 **김영걸** 김영걸

이 사 **박나리** 박나리

이 사 **정소연** 정소연

이 사 **최진안** 최진안

이 사 **하지혜** 하지혜

이 사 **한재호** 한재호

이 사 **허순범** 허순범

감 사 **성종훈** 성종훈

감 사 **신범섭** 신범섭